

# 서울특별시 세입금 온라인 수납대행 계약서



2011. 3. 2

# 서울특별시 세입금 온라인 수납대행 계약서

서울특별시 수납업무의 효율적인 처리와 시민의 편리한 세입금(歲入金) 납부를 위해 과세권자인 서울특별시(이하 “갑”이라 한다. 자치구를 포함한다)와 중계센터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이하 “을”이라 한다), 수납대행을 담당하는 은행사 등(이하 “병”이라 한다) 및 위탁납부를 처리하는 신용카드사(이하 “정”이라 한다. 신용카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포함한다)는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세입금 온라인수납대행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지방재정법」 제6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해 “갑”의 금고업무 중 세입금 수납업무를 “을”과 “병”과 “정”이 취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계약당사자”란 “갑”과 “을”과 “병”과 “정”을 말한다.
2. “세입금”이란 “갑”의 세입예산에 의거한 일체의 수입금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말한다.
3. “자치단체고”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 설치된 “갑”의 금고를 말한다.
4. “중계센터”란 “갑”과 “병” 또는 “정” 간의 수납자료와 자금이체를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중계시스템”이란 중계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세입금 수납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전산조직을 말한다.
6. “이택스”란 “갑”의 세입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갑”이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하며, 이 경우 SEN(서울시에서 금융기관과의 수납자료와 자금이체 중개 및 세입금 수납 처리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7. “영업점”이란 본 계약에 의해 납부자로부터 수납을 대행하거나 위탁납부를 처리하는 “병” 또는 “정”의 본점, 지점, 기타 대리점 등의 영업소를 말한다.
8. “납부자”란 납부의무자 또는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를 위탁받은 자로 제2호의 세입금을 사실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
9. “특화사업”이란 “갑”이 시민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편의점·자동화기기·모바일뱅킹·폰뱅킹·IPTV 등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제공되는 납부서비스

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 ①“을”은 “갑”의 세입금 수납과 관련한 중계센터의 사무를 “갑”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한다.

②“병”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갑”을 대신하여 납부자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하여 “갑”에게 납입하는 업무(이하 “수납대행”이라 한다)를 담당한다.

③“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납부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세입금을 대신 납부하는 업무(이하 “위탁납부”라 한다. “위탁납부”는 제2항의 “수납대행”에 포함된 업무형태로 본다)를 담당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을”과 “병”과 “정”은 지방재정법 등의 관계법령, 본 계약에 의한 「서울특별시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각 “갑”의 중계센터·수납대행·위탁납부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세입금 수납업무 처리와 관련한 세부적인 절차와 요령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하며 동 규약은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5조(“을”의 업무)** ①“을”은 중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갑”과 협의하여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을”은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병”과 “정”에게 개별납부자의 세입금 부과 및 수납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병”과 “정”이 온라인에 의해 수납대행 또는 위탁납부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을”은 “병”과 “정”이 각 납부자로부터 수납한 세입금의 수납내역을 실시간으로 이택스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6조(계좌의 설치)** “병”은 “갑” 및 “을”과 협의하여 수납대행업무에 필요한 계좌를 설치하되 계정과목은 별단예금으로 한다.

**제7조(“병”의 수납자료 처리)** ①“병”은 세입금 수납자료를 온라인에 의해 실시간으로 “을”의 중계센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을”은 “병”으로부터 수신한 수납자료를 실시간으로 이택스에 전송하여 납부자가 세입금을 납부하는 즉시 “갑”이 수납소인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은 당일 최종 마감한 수납집계표를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수납일 익영업일

10:00까지 이택스에 전송하여야 한다.

**제8조("병"의 수납금 처리)** ①"을"은 "병"이 각각 수납한 세입금을 익영업일부터 기산하여 제7영업일 13:00 이전에 한국은행의 차액결제방식에 따라 "병" 상호간 일괄 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갑"의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에 따른다.

②"병"은 제1항의 정산이 끝나는 즉시 "을"의 지시에 따라 "갑"의 금고로 송금한다.

**제9조(이체기일의 조정)** 계약당사자는 제8조 제1항 및 제12조의 수납금 이체기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체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조정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원가는 "병"과 "정"이 본 계약에 의해 수납대행 또는 위탁납부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직접비를 말한다.

**제10조("병"의 수납서비스)** ①"병"은 자신의 영업점내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 등을 중계시스템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세입금 부과 및 납부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②"병"은 납부자가 "병" 또는 "정"의 구성원이 발급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을 자동입출금기에 투입하면 해당 납부자에게 부과된 세입금 내역을 화면을 통해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부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 납부하는 경우
2. 신용카드 등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3. 전산장애 등 기타 사유로 온라인 조회 또는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③"병"은 납부자가 세입금 납부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업점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기기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등의 납부 편의를 위해 창구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④"병"은 납부자가 "병"과 "정"의 다른 계약구성원이 발행한 신용카드 등으로 "병"의 영업점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할 때 사용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서비스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병"은 영업점에서 납부자가 세입금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 비



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각종 납부자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도록 한다.

**제11조("정"의 수납자료 처리)** ①"정"은 납부자로부터 세입금 납부를 위탁받은 경우 이택스를 통한 세입금을 제외한 세입금의 경우 카드결제 승인즉시 "을"의 중계시스템에 수납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

②"정"으로부터 수납자료를 수신한 "을"은 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2조("정"의 세입금 납입)** "정"은 위탁납부를 대행한 세입금("갑"의 이택스를 통하여 납부된 세입금 제외)을 "을"이 작성한 수납집계표를 기준으로 매월 단위로 마감한 후 익월 12일(매년 3월의 경우 8일,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 12:00까지 "을"의 위탁은행 집금계좌에 입금하여, 입금일 익영업일 13:00까지 "갑"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의 수납서비스)** ①"정"은 자신이 발행한 신용카드로 "병"의 영업점내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에서 납부자가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정"은 납부자가 이택스와 "을"의 납부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에서 "정"이 발급한 신용카드로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해 납부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용시간이나 요일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스템 점검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국세의 처리)** 세입금에 부과된 국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세입금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15조(취급업무 비용부담)** ①"을"과 "병"과 "정"은 본 계약에 따라 세입금 수납대행업무 또는 위탁납부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의 선택에 의해 특별히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병" 또는 "정"이 납부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납부자가 "병"의 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기사용료 ("병"은 자사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기사용료를 면제한다)

2. 납부자와 “병” 또는 “정”간의 계약에 의한 특별한 서비스 이용료
  3. 기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1. 통상적인 수납대행업무를 벗어난 특별한 업무처리에 따른 비용
  2. 세입금 수납대행업무 또는 위탁납부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비용
  3. 인터넷(“을”의 인터넷지로 등)을 통한 신용카드 수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범위 및 수준은 전국 세입금 표준수납대행 계약 및 전국 세입금 수납 사무처리규약 등에 의해 정해진 금액과 여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⑤“을”의 중계센터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을”은 “병”과 “정”에게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의무사항)** ①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없으며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에 따라 여타 계약당사자 또는 납부자에게 업무상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계약당사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과 “병”과 “정”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타인에게 임의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③“병”과 “정”은 “갑”이 본 계약상의 업무와 관련된 제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과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병”과 “정”의 자체 문서보관기준에 불구하고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정지 및 계약해지)** ①계약당사자는 계약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계약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적용법규에서 규정한 관계법령, 계약 및 규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 수납대행 및 위탁납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함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중계센터 및 중계시스템을 “갑”이 별도 계약 등을 통해 세입금 은라

인 수납대행업무가 정상화 될 때까지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①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귀책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납부자로부터 수납을 대행하거나 위탁에 의해 납부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납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을”과 “병”과 “정”은 수납금을 취급함에 있어 “갑”에게 납입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 2할의 연체이율을 지연일수 만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연6푼의 이율을 적용한다.

③“을”은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0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시행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월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3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1조(시행일)** 본 계약은 2011년 3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2조 제2호의 세입금 중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 등은 시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조(기존계약의 경과조치)** “갑”이 “병”, “정”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개별적으로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는 수납대행계약(또는 약정)은 부칙 제1조에 의한 효력발생일에 본 계약으로 대체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칙 제1조의 단서조항에 의한 시행시기 이전에는 그 업무에 관해서는 기존의

계약에 따른다.

2. 제2조 제2호의 세입금중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세입금 및 부칙 제1조에 의해 시행시기를 달리한 세입금에 대해서는 기존계약에 따른다.
3. 제2조 제 9호 특화사업의 경우에는 기존계약에 따른다.
4.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기존계약과 본 계약이 병존하여 양자간 의견을 달리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조(계약의 범위)** 계약당사자인 “병”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내부절차에 의해 본 계약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회원조합, 회원금융사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제4조(계약서의 보관)** “갑”과 “을”과 “병”과 “정”이 각각 작성한 계약서원본은 “갑”이 보관하며 “을”과 “병”과 “정”은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기명날인의 방법)**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복수의 계약구성원을 가진 “병”과 “정”은 계약구성원 각자가 별도의 계약서에 자신의 인장만 날인하되, 동일한 계약서에 동시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병”과 “정”이 날인하는 계약서에는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한다.



2011년 3월 2일

“갑”

서울특별시장



“을”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병”

주식회사 경남은행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부산은행



새마을금고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주식회사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정"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산림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롯데카드주식회사



비씨카드주식회사



삼성카드주식회사



신한카드주식회사



현대카드주식회사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식회사 전북은행



주식회사 제주은행



주식회사 하나SK카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